정관



사단법인 글로벌 헬스파트너스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"사단법인 글로벌 헬스파트너스"(이하 "법인글로벌헬스파트너스"라 한다)라 한다.
- 제2조(목적) 이 법인은 국내 및 국제 보건 증진을 위하여 연구, 교육, 봉사, 보건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,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구촌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 설립)

-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다.
- ② 법인은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국내외 시.도 단위 이상 지역에 지부를 설립할 수 있으며, 지부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3조의2(지부장의 선출 및 임무)

- ① 지부장은 지부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며, 본부 이사회에서 선출하거나 임명한다.
- ② 본부 이사는 지부장을 겸직할 수 있으며, 겸직에 따른 역할과 책임은 본부와 지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③ 겸직하는 이사는 지부와 관련된 본부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 이 경우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 시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 배제 절차를 사전에 명시하여야 한다.
- 제4조(사업)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국내외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정책

- 2. 보건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
- 3. 국내외 봉사 활동 조직 및 지원
- 4. 국제 협력 사업
- 5. 국내외 학술 및 전문가 교류사업
- 6. 국제 환자 지원 및 의료접근성 향상 사업
- 7.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 원

- 제5조(회원의 자격)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 -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두고 선택은 본인 자유의사에 따른다.
 - ④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에 신청한다.
- 제6조(회원의 권리)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,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- ② 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,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자료(예: 사업계획, 예산, 결산)를 열람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감 정보는 제한될 수 있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- 1.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설립목적에 따라 실시되는 행사와 사단 법인 글로벌헬스파트너스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.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3.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

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

- 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3장 임 원

- 제9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 ① 법인은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.
 -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 - 1. 이사장 1인
 - 2.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(이사장 포함)
 - 3. 감사 2인 이내
- 제10조(임원의 선임)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-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.
 - ③ 임기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 -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임원의 선임 제한)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특수 관계 부존재를 원칙으로 하며 이사 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- 제12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-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
- 2. 임원간의 분쟁과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정행위
-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.

- 1. 미성년자
- 2. 피성년후견인
- 3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- 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5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,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7. 본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타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이 해충돌 가능성이 명백한 자
- 8. 기타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법적 책임을 지게할 우려가 있는 자
-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.

제14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, 감사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-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④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총회개최 후 차기임원 선출시까 지 기존 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.
- 제15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-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
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을 진술하는 일
- 제16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 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4장 총 회

제17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- 제18조(총회의 구분 및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 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전까지 소집하여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-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.일시.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혹은 전자문서 형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9조(총회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

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 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 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.
- 제20조(서면결의) ① 이사장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서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서면결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다.

제21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4. 예산 및 결산의 숭인
- 5. 사업계획의 승인
- 6.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중요사항
- 제22조(의결정족수 및 위임)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회원은 총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인을 통해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3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법인과 이사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- 3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4조(총회의 의사록)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5장 이사회

제25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6조(이사회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-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7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.의결한다.

-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재산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- 4.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
- 5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6.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

- 7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28조(의결정족수)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- 제29조(서면결의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30조(의결제척사유)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6장 재산 및 회계

- 제31조(재산의 구분)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-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"별지 1과" 같다.
 -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제32조(재산의 관리)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3조(재원)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- 1. 회비
- 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
- 3. 각종 기부금
- 4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- 5. 법인이 정관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
- 6.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
- ②법인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4조(회계연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5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① 법인은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개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·편성하고,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
제36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- 제37조(업무보고)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8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사무부서

- 제39조(사무국)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-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-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추천과 이사장의 임명으로 선출된다.
 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8장 보 칙

- 제40조(정관변경)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.
- 제41조(법인해산)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42조(잔여재산의 처리)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- 제43조(청산 종결의 신고)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 출한다.
- 제44조(공시) 본 법인은 홈페이지 또는 공익법인 지정 사이트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, 활용실적, 사업계획, 결산보고서를 포함한 주요 운영 정보를 공개하며, 공시자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까지 게시한다.
- 제45조(준용규정) 본법인은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.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,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46조(규칙제정)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이 있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발기인의 기명날인)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제4조(정관 개정 전 행위의 유효성)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법인 설립을 위해 발기인 또는 법인이 수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.

2025. 1.

사단법인 글로벌 헬스파트너스

설립발기인 정애숙 (인)

설립발기인 이유정 (인)

설립발기인 정유미(인)

설립발기인 공기서 (인)

- 설립발기인 이은경 (인)
- 설립발기인 이혜미 (인)
- 설립발기인 김홍조 (인)

재 산 목 록

총 계	원					
1. 기본재산	소재지	자산분류	면적(m²)	평가액(원)	출연자	비고
		대 지				
		출연금		50,000,000	정애숙 은승표 이유정 정유미 송제민	
		소 계				
2. 운영재산	품 목		대 수	종 류	금 액	비고
	에어콘					
	컴퓨터					
	노트북					
	TV					
	프린트기및집기류					
	냉장고					
	전자렌지					
	엠프음향기					